■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Methanol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67-56-1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용기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취급시 양압자급식호흡보호구(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apparatus) 를 착용할 것
	화학사고 예방	- 취급 또는 작업 시는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고 고글형 보안경, 보호의, 고무(또는 네오프렌)재질의 장갑 및 고무장화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 - 작업 중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 모든 인화성물질을 제거할 것.
	보관・저장	-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밀폐 보관할 것.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점화원과 가까이 두지 말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